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30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최형두 · 이헌승 · 서지영
김기웅 · 김상훈 · 진종오
신성범 · 박충권 · 김태호
백종헌 · 윤영석 · 엄태영
김장겸 · 이상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도입과 외부 협력업체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현행법 상의 정보보호지침은 이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복잡해진 IT 공급망 관리와 내부자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플랫폼 기업의 시스템 업데이트나 클라우드 설정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즉시 회수되지 않아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등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격접속자나 수탁사업자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자의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지침의 향

목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및 제45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등을”을 “및 내부자의 이상 행위 또는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원격 접속자·수탁 사업자를 포함한 계정별 식별·인증과 차등적 접근통제 등에 관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외부 자원의 안전성 점검 및 공급망 보안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제45조의3제4항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7 및 제4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5조의3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② (생략)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4. (생략) <u><신설></u> 5. (생략) ④ (생략)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원격 접속자·수탁 사업자를 포함한 계정별 식별·인증과 차등적 접근통제 등에 관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u> 3. ----- ----- <u>및 내부자의 이상 행위 또는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u> ----- -----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u>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외부 자원의 안전성 점검 및 공급망 보안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u>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신설>

마. (생략)

⑤·⑥ (생략)

<신설>

<신설>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3조의5제3항에 따
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바. (현행 마목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기적
인 감사 및 개선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보관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
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
·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

<신 설>

⑦ (생 략)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 략)

<신 설>

<신 설>

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
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
지를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
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제45조의3제7항을 위반하
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5조의3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

<u>4의5. · 4의6.</u> (생략)	<u>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u> <u>4의7. · 4의8.</u> (현행 제4호의5 및 제4호의6과 같음)
5. ~ 24. (생략)	5. ~ 2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